

의안번호
1428

2017.12.20.(수)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안)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목적	-----	1
2. 관련법규	-----	1
3. 조사기간	-----	1
4. 조사대상 기관 및 사업	-----	1
5. 조사반 편성	-----	2
6. 조사경과 및 활동사항	-----	2
7. 관계공무원 출석현황	-----	4
8.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	4
9. 행정사항	-----	7
10. 참고자료		
- 중구B-05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	8
- 질의회신 결과	-----	10
- 언론보도 자료	-----	19
- 관련법규	-----	26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안)

1. 조사 목적

-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가 절차 및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하였는지 여부 등의 조사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사항을 밝혀 주택재개발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며, 행정적 책임에 관한 조사 확인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조사기간 : 2017. 9. 6. ~ 2017.10.31.

※ 당초 9.30까지, 2017.10.11. 제202회 임시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4.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대상 사업

- 조사대상 기관 : 중구청(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사대상 사업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조사 사무의 범위

- 주택재개발사업 인가 등 추진절차 전반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관한사항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사항 등
-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는 사무 제외

5. 조사반 편성

반 별	조 사 위 원	사 무 보 조	비고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 원 장 : 권태호 위원 ○ 부위원장 : 김순점 위원 ○ 위 원 : 김영길 위원 천병태 위원 이효상 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행정 7급 성낙은 (속기) 행정 7급 이지은	

6. 조사경과 및 활동사항

구 분	일 시	주 요 안 건(내용)	장 소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	2017.9.6.(수) 10:00	○ 조사특위 발의안 의결 ○ 특위위원 선임(5명)	본회의장
조사특위 제1차 회의	2017.9.6.(수) 15:00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조사계획서안 작성	특위 회의실
주민 간담회	2017.9.7.(목) 10:30	○ 중구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 조합원 모임 대표자 간담회 (주민5명)	특위 회의실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2017.9.8.(금) 10:00	○ 조사계획서안 승인	본회의장

구 분	일 시	주 요 안 건(내용)	장 소
조사특위 제2차 회의	2017.9.8.(금) 11:00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서류제출 요구의 건	특위 회의실
민원접수	2017.09.13.(수)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 합, ▶ 특위활동 중단 요구	민원서류
특위위원 자체 간담회	2017.9.14.(목) 13:30	○ 조사방향에 대한 협의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3차 회의	2017.9.14.(목) 14:00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 사 ▶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특위 회의실
특위위원 자체 간담회	2017.9.25.(월) 14:00, 16:00	○ 특위 향후 추진방향 협의	위원장실
조사특위 제4차 회의	2017.9.27.(수) 10:00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 사 ▶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특위 회의실
간담회 개최	2017.9.27.(수) 18:30~20:00	○ 주민대표5, 중구청(도시과)3, 조사위원 2명 참석 ○ 주민대표와 중구청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의원 회의실
특위위원 자체 간담회	2017.9.28.(목) 11:00	○ 특위활동 활동기간 연장 협의 ○ 개인정보 공개 등에 관한사 항 국토부 질의	위원장실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7.10.11.(수) 11:00	○ 특위활동 활동기간 연장 의 결 (10.31.까지 연장)	본회의장
특위위원 자체 간담회	2017.11.17.(금) 11:00	○ 특위활동 향후 추진방향 협 의 (특위활동 마무리 협의)	위원장실
제5차 회의	2017.12.19.(화)10:10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상정	특위 회의실

7. 관계공무원 출석 현황

- 출석 연인원 : 2회, 8명
- 일자별 출석 현황

구 분	출석 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공무원	제3차 특위 '17.9.14(목) 특위 회의실	건설도시국	국장	서인보	증인
"		도시과	과장	최황립	"
"		"	계장	김희근	"
"		"	주무관	이동수	"
공무원	제4차 특위 '17.9.27(수) 특위 회의실	건설도시국	국장	서인보	증인
"		도시과	과장	최황립	"
"		"	계장	김희근	"
"		"	주무관	이동수	"

8.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조합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와,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의 장기집회에 따라 주민들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사항을 밝혀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출발하였다.
- 그러나, 조사기관(중구청)의 필요 없는 자료 제출로 인하여 원만한 조사활동을 펼칠 수가 없었다.
-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 공개 등 조사활동 관련법등의 법리해석 근거 확보를 위하여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조사활동 자료제출에 대한 우리위원회와 중구청의 확연한 입장 차이로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또한, 조사위 활동 초기에 주민대표들과 중구청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이마저 사실상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음을 밝힌다.
- 중구청에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만을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의 편에서 그 분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한다.

나. 처리의견

1)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감독 철저

중구청은 「도시정비법」 제77조(감독)의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조사활동 등 관리감독을 철저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사항 해소에 노력해 주고, 조합의 위법사항 여부에 따라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조합 임원 해임 총회” 를 위한 조합원 명부 공개

중구청은 조합원이 “조합임원 해임총회”에 필요한 조합원 명부를 조합(추진주체)에 요구하였을 때 「도시정비법」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을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고, 조합의 조합원 명부 제공 거부로 중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의 범위 내에서 보유 자료를 제공해 주었어야 했음.

3) 의회 요구자료 제출에 대하여

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서류제출은 원칙적으로 거부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따르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선거의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지방자치법령 질의 및 답변(지방의회 정례회 관련)」 III서류제출요구 및 IV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Q&A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외의 사유로는 요구 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필요없는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이번 조사특위에서와 같은 필요없는 자료 제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 서류제출요구권 등을 존중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실히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없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다.

9. 행정사항

가. 중구의회

-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제2차 정례회 중)
-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집행기관 통보 (의결 후 3일 이내)

나. 집행기관(중구청)

- 1)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

10. 참고자료

- 가.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별첨1.](#)
- 나.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항 [별첨2.](#)
- 다. 언론보도 [별첨3.](#)
- 라. 관계법령 [별첨4.](#)

별첨 1.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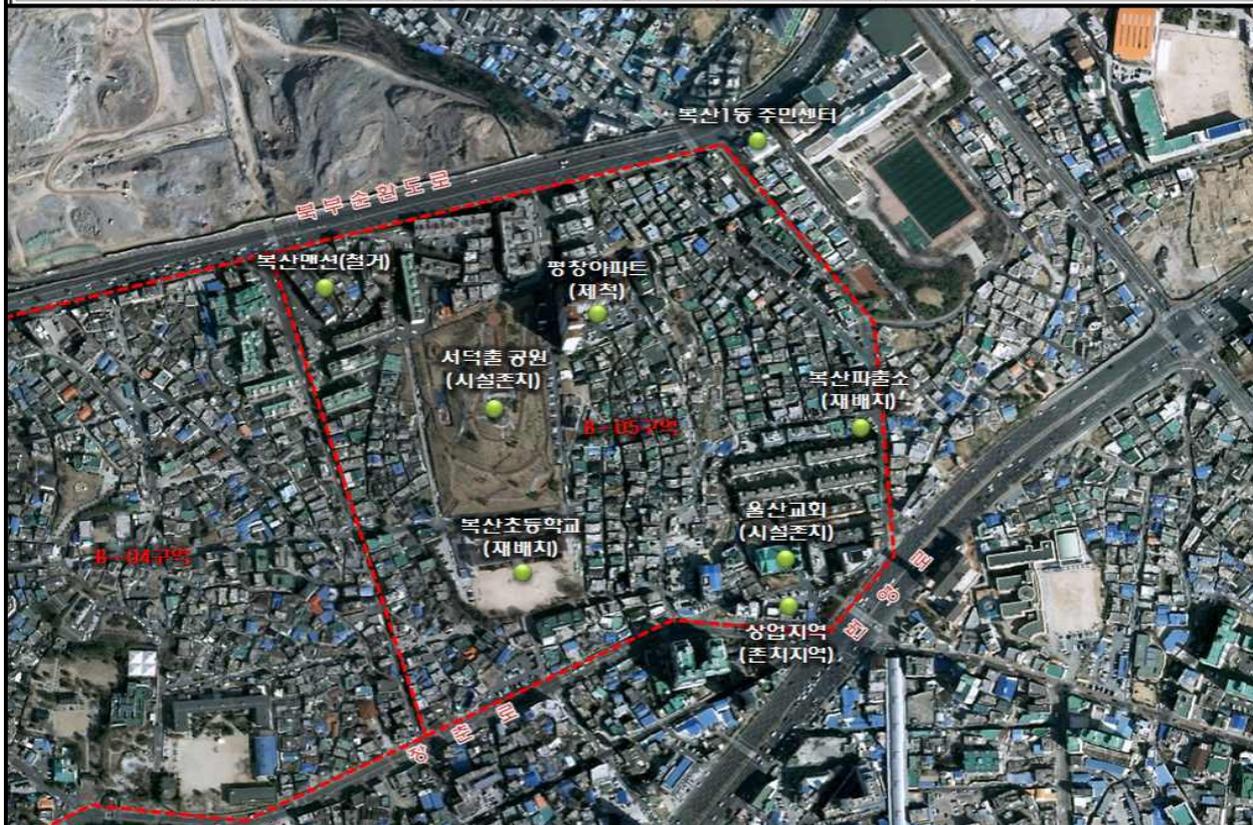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복산동 일원 / 204,123m²
- 기존 현황 : 토지등소유자 1,351명, 건축물 1,271동
- 사업계획 : 건축물 29개동 2,591세대 (지하3층, 지상8~25층)
- 조합원 : 1,162명

□ 주요 추진사항

- '06. 5. 18.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06. 9. 2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50.82%)
- '07. 8. 2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11. 11. 10. : 조합설립인가(75.35%)
- '14. 9. 27. : 시공사 선정(효성, 진흥, 동부토건)
- '15. 4. 23.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 '16. 1. 11. : 사업시행인가 (평균용적률 247.11%)
- '16. 11. 19. :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 '17. 2. 27.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 3. 3. : 시공사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접수
- '17. 3. 26. : 조합임원 해임총회(무산 : 의사정족수 부족)
- '17. 3. ~ '18. 7 : 이주 및 철거
- '17. 6. 5. :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기각(5.25신청)
- '17. 7. 23. : 조합임원 해임총회(무산 : 의사정족수 부족)
- '17. 8. 23.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 소취하(5.25신청)
- '18. 8. ~ '20. 12 :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

□ B-05구역 위치



별첨 2.

질의회신결과

□ **질의 기관**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질의 요지**

- 조합원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와 같이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으로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이후 해당 정비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취소되었으나 대의원회의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경우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 **질의 회신 내용**

- 국토교통부(2017.10.13./ 2017.11.15.) [page11,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2017.11.02.) [page15](#)
⇒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임. 서울특별시의 업무처리기준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국토교통부(2017.11.15.) [page17](#)
⇒ 그동안의 조합총회의 의결내용, 조합과 정비업체간 계약내용 등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회신 공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의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조합원 명부 공개 관련)**

1. 귀 의회 의회사무국-4700(2017. 9. 29.)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조합원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동 법에 의한 자료의 공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할 구청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전결 2017. 10. 13.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5263 (2017. 10. 13.) 접수 의회사무국-4798 (2017. 10. 13.)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90 팩스번호 044-201-5532 / ciellove3@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관련 자료의 공개 관련)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4856(2017. 10. 17.)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
니다.

2. 질의요지

- 조합이 조합원명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원 명부
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각 호를 포함
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
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관할 자치구로 하여금 이를 공
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보유 중인
자료에 대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의회사무국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전결 2017. 11. 15.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5850 (2017. 11. 15.) 접수 의회사무국-5341 (2017. 11. 16.)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90 팩스번호 044-201-5532 / ciellove3@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의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의(조합원 명단)에 대한 답변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4857 (2017. 10. 17.)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조합원이 “조합임원 해임총회” 를 위하여 조합(추진주체)에 조합원 명부 공개 요구하였으나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조합원 명부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 ① 조합원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합원 명부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 ② 서울특별시의 경우,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별첨)” 을 정하여 구청장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의 사례를 들어 조합원 명부를 공개 가능한지 여부
- ③ 울산 중구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 기준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답변>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각종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가 이뤄질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임원 해임총회” 를 위하여 조합(추진주체)에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자료제공을 거부하여 조합원 명부를 제공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조합원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를 공개 요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업무처리 기준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며, 서울시와 같이 별도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정보공개정 전결 2017. 11. 2.
책과장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202 (2017. 11. 2.)

접수 의회사무국-5096 (2017. 11. 3.)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0호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2-2100-3425

팩스번호 02-2100-3459

/ son1209@moi.go.kr

/ 대국민 공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울산광역시(도시창조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울산광역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관련)
<p>1. 귀 시 도시창조과-8865(2017. 10. 13.)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p> <p>2. 질의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A와 B를 공동 선정→창립총회에서 A의 선정을 무효로 결의→조합 임시총회에서 C를 추가 선정하여 B와 C를 공동으로 수행하겠다는 의결→B의 계약을 해지→C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취소→대의원회에서 C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결한 상황과 관련하여 C의 단독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p>3. 회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C의 단독 업무수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안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간 계약 내용 및 공동 선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p>끝.</p>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관대우	하철호	행정사무관	전인재	전결 2017. 11. 15.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5848	(2017. 11. 15.)	접수	도시창조과-9953	(2017. 11. 16.)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90	팩스번호	044-201-5532	/ ciellove3@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별첨3.

언론 보도 자료

경상일보 2017년 9월 6일(수)

중구의회, B-05(복산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특위 구성

울산시 중구의회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제출된 일부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구 B-05(복산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중구의회는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태호 의원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 중구청의 관리감독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권태호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특위는 향후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사기간과 범위 등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수립해 14일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회의 자체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중구 B-05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조합측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현재 중구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고 중구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최초의 재개발 사업인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원 10만7765㎡ 부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136가구를 포함해 2591가구가 공급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울산매일 2017. 9. 6.(수)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구의회 특위 발족...권태호 의원 등 5명

울산 중구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만한 정상추진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권태호, 김영길, 천병태, 이효상, 김순점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중구 B-05 주택재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조사의 기간과 범위 등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수립,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서경환 의장은 “구민이 겪고 있는 논란과 대립, 마찰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만큼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현명한 해결책 제시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곤 기자

울산신문, 2017년 9월 6일(수)

중구의회, 복산동 재개발 특위 구성 행정사무조사 위원 5명 선임

울산 중구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구 복산동(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은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만한 정상추진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권태호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중구 B-05 주택재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조사의 기간과 범위 등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수립,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울산제일일보 2017년 9월 6일(수)

울산 중구의회, B-05 재개발사업 조사

시공사 선정·공문서 위조 등으로 조합-비대위 갈등
중구의회, B-05구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서 행정 관리감독 적합여부 조사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 최초의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구 복산동(B-05)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사업 완료의 구부 능선을 넘었으나 시공사 선정, 조합의 공문서 위·변조 의혹 등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는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은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만한 정상추진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권태호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중구 B-05 주택재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조사의 기간과 범위 등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수립,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중구 B-05재개발사업은 지난 2월, 사실상 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중구청으로부터 승인되면서 거주민 이주, 일반분양, 착공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직후. 다수의 조합원이 종전 자산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으며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부터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 대항하는 비대위가 조직되면서 집행부와 시공사 교체를 포함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또 조합 집행부의 무자격 정비업체 업무 수주 등 도정법 위반 의혹과 조합의 공문서 위·변

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고소,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비대위 성격의 ‘중구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 모임’은 ‘중구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탓하며 연일 중구청 앞에서 항의집회와 중구청장 규탄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박성민 중구청장을 만나 “조합의 공문서 위·변조 사실이 드러났으니, 시에 조합직무정지 처분을 요청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이 중구청장을 압박하며 필사적으로 항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된 현재, 다음 이주와 철거단계 등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 법적 위반 유무와 관계없이 ‘울산지역 최초 재개발 사업의 마무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대로 종료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연일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착수돼 귀추가 주목되는 것.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구민이 겪고 있는 논란과 대립, 마찰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만큼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현명한 해결책 제시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왕근 기자

뉴스시스 2017. 9. 6.(수)

울산 중구의회, 복산동 재개발 특위 구성 . . . “관리감독 적합 여부 조사”

권태호 의원 대표 발의... "주민 갈등·의혹 해소해야"

울산 중구의회가 최근 위조문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구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중구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은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권태호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중구 B-05 주택재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조사의 기간과 범위 등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수립,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서경환 의장은 "구민이 겪고 있는 논란과 대립, 마찰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만큼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B-05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놓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제출된 일부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비대위 격인 '중구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 모임' 회원 30여 명은 지난달 29일, 30일 이틀간 조합의 직무정지 처분을 요구하며 중구청 점거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조합 측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울산 최초의 재개발 사업으로 복산동 460-72 일원 10만7765㎡ 부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39㎡) 136가구를 포함해 59㎡, 75㎡, 84㎡ 등 총 2591가구가 공급되며 예상 총 사업비는 9100억원에 이른다. 【울산=뉴스시스】 구미현 기자

울산제일일보 2017년 9월 11일(월)

울산 재개발 조합 “중구 B-05구역 중구의회 행감 특위 구성 철회해야”

“조사·재판에 영향… 지방자치법 위반도” 주장

울산시 중구 복산동 중구 B-05구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공사 선정총회시 일부 서류의 위변조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인데다 총회무효소송도 진행중”이라며 “중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조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특위 구성 자체가 차기 선거에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목적인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특위 활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의원과 시의원이 비대위 집회와 회의에 참여해 조합원을 선동하고 비대위 활동을 하는 것을 계획, 주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 측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근거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이 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음을 주장했다.

조합은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비대위는 각성하고 조합을 장악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조합원을 선동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이주비와 사업비가 1천억 이상 조달된 현시점에 사업을 지연시키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조합원 전체를 공멸로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체 조합원 1천162명 중 비대위를 지지하는 극소수 인원들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익적인 목적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적폐”라고 거듭 밝혔다. 강은정 기자

별첨4.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데이터·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사·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추진위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

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⑦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조사의 한계) 자문

울산광역시 법제협력관

국회법해설 729쪽 인용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검찰사무는 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자문 (전수경 변호사)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권 및 감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조사목적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형사적인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목적 등이라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할 것이라 보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의회가 비록 수사 중인 사건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형사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적 목적(구체적인 원인 규명 등)” 등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할 것이나, 조사계획서의 작성 시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가 아닌 사안임을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자료
수집에 관한 질의 <국민신문고-행정안전부>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		
담당자(연락처)	양정아 (02-2100-3861)	신청번호	1AA-1709-100803
접수일	2017-09-12 09:52:5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121500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9-19 18:52:50
처리결과 (답변내용)	<p><질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를 근거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p><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고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해당 서류제출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 등에서 서류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공되는 자료를 종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 및 개별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